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보완(안 제4조의5제5항제3호)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기준 등 보완(안 제9조의3)

-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
- 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는 기준 신설

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기준 일부 추가(안 제9조의7제2항)

-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자' 기준을 추가
-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군 귀환포로' 기준을 추가

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9조의8)

- 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금지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 관련 별표 4)

- 가중처분의 적용 기준에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의7제2항에 제10호의5 및 제10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제15조의9 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9조의8제3호 중 “주차행위”를 “주차, 야영 및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금액을 가중”을

“가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1의 비고 제1호의 단서규정은 이미 조성된 숲속의 집에도 적용한다.

제3조(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1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야영장·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나. 편의시설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전망대·모노레일·야외쉼터·야외공연장·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임산물판매장·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라. 체험·교육 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목공예실·생태공예실·산림공원·숲속교실·숲속수련장·세미나실·산림작업체험장·임업체험시설·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마. 체육시설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바.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중계기·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소화기·재해경보기·보안등·비상조명설비·비상조명기구·재해예방시설·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비고

-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숲속의 집은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400제곱미터 이하는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 되어야 한다.

- 라목에 따른 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시설별 설치 기준	1) 기본시설	가)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다)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라)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의 집은 단층으로 조성 할 것
	2) 편익·위생 시설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나)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안전시설	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나)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비고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④ (생략)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 ----- ----- -----.
1. ~ 10의4. (생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11. ~ 16. (생 략)

③ (생 략)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2. (생 략)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생 략)

10의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순순위자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포로가족

11. ~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

-----.

1. 2. (현행과 같음)

3. -----
-- 주차, 야영 및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4211